

정책제안서

□ 제안정책

제안정책	청소년증 활용 방안 마련
대상 (수혜자)	○ 강원도 내 청소년
소요사업비	○ 청소년증의 활용 방안 정책 실현에 따라 상이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분석)	<p>1.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하는데 있어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p> <p>2. 청소년증 및 학생증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 가능한 곳이 많이 없다.</p> <p>3. 청소년증의 문제점</p> <p>첫째, 청소년증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소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가야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p> <p>둘째, 실질적인 할인 및 사용 혜택이 적다는 점이다. 청소년증 발급 초기에는 국공립 문화, 체육 시설과 연극 등 공연예술분야, 버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극장이나 철도, 지하철 요금 등에서는 재정상 이유로 할인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p> <p>셋째, 학생증과 차별점이 없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생증과 거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인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증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위험이 크다. 이것은 다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하여금 주위 시선을 우려해서 청소년증 발급을 기피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p> <p>넷째, 홍보가 부족하다. 일부 극장에서는 학생증을 제시하면 할인을 해주면서도, 청소년증을 제시한 사람에게는 할인을 해주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였다.(간행물- 한국정책학회보 15권 1호 269~270P,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정책학회)</p> <p>4. 청소년증 활성화 필요성</p> <p>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우대제도는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청소년증 시행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청소년복지지원법(국가청소년위원회, 2006)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6조 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고 하였으며, 2항에는 국</p>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7조에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청소년할인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또한 청소년할인이 일부 교통수단이나 문화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며, 할인율도 10~30% 내외로 그리 높지 않다. 특히 레저·스포츠활동, 소비활동, 교육·진로개발활동 등의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조례를 통해서 위와 비슷한 영역에서 청소년할인이 결정되고 있지만, 대체로 할인내용이나 할인율이 대동소이하다.(청소년 우대제도 및 청소년증에 대한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청소년증 현황

청소년우대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시설의 이용요금을 성인에 비해서 일정정도 할인해 주는 방식이 가장 많으며, 할인 쿠폰의 제공, 포인트 적립, 특별우대요금제, 일정 정도의 지원금 제공, 시설 이용료 면제 등의 다양한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증은 비학생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신분증명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되고 있다.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철도(무궁화) 등의 수송시설,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미술관등 공공시설, 놀이공원 등의 문화시설,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체육시설 등에 할인되고 있다. 청소년증은 2003년 문화관광부 당시 시·도청소년과장 회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03년 10월 15일 서울시의 시범 발급 이후에 2004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발급하고 있다. 청소년증 발급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정책과가 담당하였으나, 2005년 4월 27일 이후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청소년보호위원회와 통합되어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로 인해 문화관광부의 훈령이었던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흡수되었다.(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목적 (제안취지)

1. 많은 학생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문화활동(영화관, 노래방, 서점, 관광지(레일바이크, 황성루지체험, 간현관광지 출렁다리 등), 교통(버스, KTX, 항공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청소년증을 기피하는 사례의 현 시스템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p>2-1)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낙인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p>
<p>세 부 내 용</p>	<p>1. 청소년증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조(청소년의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각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사업 확대(학생증및 청소년증)를 진행한다.(예: 영화관, 대중교통, 휴양지, 공연장, 체육시설 등) - 각 지자체의 시, 군의회 조례를 제정한다(청소년복지지원금, 교통비 지원, 문화생활비 지원, 청소년요금대폭 할인지원) <p>2. 강원도 내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에 의해 할인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명확하게 표기 및 의무화하여야 한다.(서비스 및 정보제공에 대한 권리 필요)</p> <p>3. 청소년증 발급 통지서를 통해 청소년증을 홍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해당 청소년 주소지로 청소년증 발급 통지서를 통해 청소년증 홍보 및 발급 안내을 한다. <p>4. 청소년증 보유 혜택 제공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내 우수 정책 중 청소년증 보유 해당자 및 가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 실현 - 청소년증 보유 및 보유자 가족 등의 동반 혜택 제공 - 혜택 제공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을 청소년도 동참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며 청소년 거주 신청 가정에 대상으로 청소년증 인증 시 추가 전기세 할인 및 포인트 추가 제공 · 기존 할인 제도에 대해 청소년증 보유자 동반 시 추가 할인 제공 등의 청소년 복지 서비스, 청소년증 소지 동기부여 제공 · 지역화폐, 지역 카드 등 청소년증과 연계하여 가족도 청소년증 유효 기간동안 함께 혜택 제공 · 금융상품 개발 시 청소년증 소지 청소년에 대한 추가 금리 혜택 및 가족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복지 정책 실현 필요
<p>기대효과</p>	<p>1.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을 할 때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든다.</p> <p>2. 청소년증을 기피하는 사례의 현 시스템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p> <p>3. 국내 청소년 비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p> <p>4. 추진 시 어려운 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p>

참고문헌

- 간행물- 한국정책학회보 15권 1호 269~270P,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정책학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 우대제도 및 청소년증에 대한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발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